

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[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](#)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4조)

: [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](#) 변경

나.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(안 제 6조)

: (대상) 사업용 화물자동차

: (유가연동보조금) 2023년 7월 11일 ~ 2024년 8월 31일

*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

다. 시행일

: 2024년 7월 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[물가경제차관회의\('24.6.21.\)](#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 호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제나목 중 “비상경제장관회의 <2024. 4. 15.>”를 “물가경제
차관회의 <2024. 6. 21.>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의) (생 략)	제4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비상경제장관회의 <2024. 4. 15.></u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 는 “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”	나. <u>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</u> ----- ----- -----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(생 략)	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 용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나목 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「여객자 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 5조 단서를 준용한다.</u>	② (현행과 같음)

*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
기간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
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